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59

발의년월일 : 2020. 10. 26
발 의 자 : 황순자 의원
강성환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윤기배 의원

1. 제안 이유

○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안 제4조)

-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측정,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 부실공사 신고·접수(안 제6조)

- 부실공사를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 부실공사 여부,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 부과한 벌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등급”이란 제3호에 따른 주요 부실내용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등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부실 측정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3.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판정결과 조치 등) 발주청은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규모·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교육감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등급이 "그 밖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및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실공사의 등급 분류 및 포상금 한도액

(제2조제4호, 제11조제3항 관련)

등급 구분	부실공사등급의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0만원 이내
2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내
3 등급	주요 구조부는 아니나 부실로 인하여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
4 등급	주요 구조부는 아니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신고내용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는 속하지 않지만 공사품질 향상 또는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감사장

[별지 서식]

<table>
<tr><td colspan="5">부실공사 신고서</td></tr>
<tr><td rowspan="2">신 고 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주 소</td><td></td></tr>
<tr><td rowspan="2">신고공사</td><td>사업명</td><td></td><td>현장위치</td><td></td></tr>
<tr><td>공 종</td><td></td><td>발생일자</td><td>년 월 일</td></tr>
<tr><td>부실공사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증빙서류</td><td colspan="4"></td></tr>
<tr><td>비 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0. 생략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 17.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